

의안번호	2212807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2.
추 계 번 호	25A493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공익법인 출연주식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조정 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제16조제2항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) 및 제48조제2항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)	○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상향조정: 20 → 50% -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사업은 학문 등의 증진 목적, 장애인 등 사회복지, 환경보호 등의 14개 공익사업 ○ 공익법인이 출연주식 의결권을 「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2호 항목에 대하여만 행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15% 신설 * 해당 국내 계열회사(상장법인으로 한정)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·정관변경,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·영업의 양도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제16조제2항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) 및 제48조제2항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조정(20→50%)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주식 의결권을 「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2호 항목에 한정하여 행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(15%) 신설 등을 하게 되면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출연주식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피상속인의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종류·가액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최근 3년간 공익법인의 가동 법인수 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37,556개, 2022년 39,273개, 2023년 39,916개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최근 3년간 공익법인의 가동 법인수 현황

(단위: 개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법인수	37,556	39,273	39,916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